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총학와
2001년 방향성 모색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01년 3월 10일 2시
장소: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소극장
주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관악 여성모임, 연대 총여학생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고대 여성위원회,
외대 여학생위원회, 중앙대(계2캠퍼스)
총여학생회, 이대 여성위원회,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글/순/서

들 크 큰

글 순 서

여는 글

학칙제정의 필요성 및 원칙

학교별 반성폭력 학칙운동사례 총화글

연대회의에서 제시하는 학칙 가안과 해지글

보론 - 2000년 성폭력 사례 및 해결과정



여/는/글

여는글

대학,

성폭력 사각지대라고요?

'다소' 진보의, '비교적' 열려있는,

'그나마' 자유로운, 소통과 논쟁이 가능한 공간이라고요?

관대한 당신의 자위는, 침묵은,

방관을 훌쩍 뛰어넘어 후 성별화된 폭력의 재생산에 일조하고 있지는 않았던지요.

여성,

'나'를 묻기에 앞서 내게 내려앉은 '여성'이라는 이름은

이 공간안에서도 예외없이 하나의 내부 식민지를 구성한 채

성적공포정치를 통해

끊임없이 내 몸을 착취하고, 내 영혼을 몰수해가려 합니다.

발화,

힘을 내려요?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구요?

억압자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성별화된 형태로 주어지고, 존재하는 섹슈얼리티

규정은 이미 현명하게도 '피해자 비난하기' 기제를 쥐고 있지 않았던가요.

성폭력의 경험에 더해지는 2차, 3차 가해는

나를 더더욱 효율적으로 침묵하게 만드느걸요.

저항의 의미- 벽을 허물다

닥치라는군요.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다고,

자못 진보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소리 지릅니다. 그럼에 나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습니다.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 '반(反)성폭력 연대회의'는요.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 단기적인 일회성을 극복하고, 근본적인 우리사회의 성의식과 성규범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보해나갈 상시적인 기구와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96년 발족한 연대회의는 기간 성폭력에 관한 여성적 담론을 물화시키는 작업과 동시에 '연대'라는 단어에 착목하여 서로의 차이를 긍정하는 가운데 여성운동내의 광범한 정보의 네트워크 구실을 해 왔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한 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대응해 왔으며,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에 대한 공유를 통해 학칙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고, 대중활동을 추동해 왔습니다.



여/는/글

공청회가 있기까지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학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성원들에게 실제적 영향력을 줄 있는 학칙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여성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응 및 해결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학사회의 구성주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남성중심의 성담론을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의식지행의 변환, 그리고 나아가 사회안에서 여성권 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진정한 자치규약으로써의 학칙 재구성의 논의들을 학원사회안에서 환기시킴으로써 나가서 학원 자치운동, 대중운동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활동보고

2월~3월

이월작업과 성폭력 워크숍을 진행

5월~6월

살맛과의 연대하여 '현장활동시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 현장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위들에 제안하는 활동을 하였음

성폭력 상담소 실무자 교육진행

6월~7월

여운단위들과 연대하여 '여성연대한판'을 기획, 성폭력 학칙, 여성노동, 매매춘 등 주제별 여성운동을 총화하는 시간을 가짐.

현 100인위원회의 전신인 보건의료노조조건 공대위에 결합하여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주관함

7월~8월

경원대 사건에 대해 교육부에 압력을 요하는 내용의 공문을 여특위에 발송

10월~11월

경원대 사건을 둘러싸고, 여특위의 위상과 한계점에 대해 고민, 논의를 구체화한 후 여특위를 방문하여 답변을 들었음

12월~3월

지난 1년간 발생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총화하고, 현재 학칙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단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그간 학칙운동의 성과물과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정리하며, 본 공청회를 기획하기에 이룸

공청회 기획을 마치며

이제 막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여운단위들의 건투를 빌며.....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반(反)성폭력 학칙의 필요성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대학 사회에서 문제시되기 시작하면서, 항상 그러한 문제제기는 성폭력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공동체 내의 성문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보아도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한 탄핵(?) 정도의 해결을 보면서 대학 사회에서 잠시 이슈화되었다 사라지기 일쑤였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아주 빈번한 사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폭력이 일상화되어 가는 것을 반대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위하여, 일상화된 성폭력에 의한 당위가 아닌 절실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우리의 권리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을 주장한다.

현재 대학 사회 내에서 학칙은 접근하기 어렵고 공동체의 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풍긴다. 실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반(反)성폭력 학칙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을 때 학칙 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학칙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폭력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써 '학칙'이라는 기제를 과감히 선택한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화석화되고 고정된 규제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는 '학칙'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학칙은 현재의 학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한 유연한 학칙, 제정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학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학칙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것이다. 즉, 학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시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칙이 아닌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범죄가 됨을 알림으로써,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만이 아닌 그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는 학칙을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학칙이므로 우리가 사고하는 학칙은 현재의 학칙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자치 규약으로써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하지만 우리는 자치규약이 아닌 명백히 '학칙'이라는 틀을 성폭력 방지의 수단으로 사고하고 있다.

반(反)성폭력 학칙은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이라는 사건은 대학 사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설문을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해 보면, 물론 학생에 의한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직원과 교수에 의한 성폭력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사회 내에서 완전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생 뿐 아니라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성폭력 근절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반하기에는 자치규약이라는 것은 학생들만의 그것이 될 수 있기에 그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칙'이라는 틀거리를 택함으로써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하에 공동체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반(反)성폭력 학칙은 학내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 뿐 아니라 대학 내에서 생활할 권리¹⁾도 보장해 줄 수 있다

1) 98년도 자료집에는 "생활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권이라는 표현으로 자칫 축소된 느낌을 줄 수 있기에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성폭력이 대학 사회에서 발생하면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다시 말하면 대학 사회 내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 속에서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그 공동체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며 공동체에서 배제 당하거나 떠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던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학 공동체 그 자체였다. 대학 사회의 구성 목적이 교육에 있다면 교육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은 대학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학당국은 성폭력 사건 속에서 전혀 학내 구성원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학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인 생활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기제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이 필요한 것이다.

반(反)성폭력 학칙은 대학 사회의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목적은 처벌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학칙을 통하여 우리는 대학 사회 내의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순간 순간의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칙'이라는 확실한 기제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사회가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보면 많은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 사회의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우리는 인정하며, 성폭력 학칙을 통하여 형성된 성문화 역시 사회적으로 유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학사회는 구성원이 끊임없이 바뀌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바탕으로 우리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어디까지 어떻게 왔나?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 대학의 흐름

많은 학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역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반성폭력 학칙제정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학내 여성운동 단위를 중심으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99년에 여성주의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구체적인 운동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반성폭력 학칙제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되었고 학내 여성주의자들도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2000년의 중요한 당면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선 총여학생회는 학내 여성자치단체와 단위 학생회 및 관심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이하 연성뿌연)'를 제안하였고 연성뿌연은 학칙제정운동의 흐름을 중심으로 만들어나갔다. 2000년 연세에서는 연성뿌연의 제안으로 새터 기간의 성폭력을 예방 및 해결하고자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였고 이로 인해 학내에서 반성폭력 담론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다.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학칙을 제정해버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2대 총여학생회가 여학생처에 학칙제정에 대해 문의해본 결과 학교측에서 학칙을 제정할 의사가 있으며 이미 학칙가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학칙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학생측의 참여를 보장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도 함께 확인되었다. 성폭력 사건이 공개될 우려가 크고 비교육적이라는 것이 학교측의 이유였다. 이러한 학교측의 일방적인 학칙제정 움직임을 확인한 연성뿌연은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동수로 참여하는 학칙제정위원회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안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연성뿌연은 학교측이 이 요구안을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총여학생회는 학부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에 제안하여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학칙제정 위원회 건설이라는 요구안은 교육부쟁 과정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실제적인투쟁 없이 학칙제정위원회 건설이라는 성과가 얻어졌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성폭력 대책위원회 이후 지난 10월 10일에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표되었다. 현재는 규정의 실제적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2. 대중적 사업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운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운동이었지만 학칙제정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학내의 동의 지반을 넓혀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좁은 범위에서나마 공유하였기 때문에 학칙제정과정에서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사업이 어느 정도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학칙제정 위원회 건설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서명 운동, 팸파메 등을 통해 학우들에게 학칙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작업을 주로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학내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례를 공개하는 자보 및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지반을 넓혀나가기 위한 교양학교도 진행하였다.

1) 학칙제정위원회 건설은 교육부쟁과정에서 열린 학생총회의 특별 요구안으로 상정되어 교육부쟁 협상안에 포함되었다. 이 요구안은 협상과정에서 받아들여져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건설되었다. 학교측에서 받아들여지기 전에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위원회 건설은 다른 교육부쟁 요구안에 비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여겨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연성뿌연은 학교측에서 가안을 받아 그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내고 학교측 안과 연성뿌연 수정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공청회에서 나온 질문이나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안이 나왔고 이 최종 수정안을 가지고 학교측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성폭력 학칙 제정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했던 것 같다. 따라서 연성뿌연에서 벌였던 대중적 사업들도 학우들의 참여도 측면만 본다면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학칙제정 과정에서 학칙의 필요성이나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학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칙안 자체가 법조문과 유사한 형태로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공유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우들의 의견 수렴이 어느 수위까지 가능할 것인지 혹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3. 학교측과의 협상과정

우리 학교는 학칙제정 위원회의 건설이 교육부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 교육부쟁 협상으로 인해 건설된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학생과 교수가 각각 4인씩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이 형태는 나중에 제정된 규정안에 명시된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모태가 되었다.

학교측과의 협상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학생 참여부분이었다. 위에서 썼듯이 학교측은 학생이 참여하면 성폭력 사건이 새어나갈 우려가 크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학생의 참여에 대해 계속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나 학생측의 지속적인 압력행사에 따라 학교측은 마지못해 학생 참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참여를 받아들이기로 잠정적 결론이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위원 수를 줄여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결국 학생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에만 학생위원을 참여토록 결론을 짓게 되었다. 학교 행정은 교수들의 몫이라는 학교측의 발상이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다.

4. 제정된 규정안

정의: 성폭력의 정의 부분에서 우리 학교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1항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2항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항의 경우는 학칙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이와같이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범위: 원래 이 부분에 동조자 규정을 넣으려고 하였는데 학교측에서 '굳이 동조자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동조자도 역시 가해자가 아니냐'라고 주장해서 동조자에 대한 명시가 빠졌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 이 부분은 원래 학교측 가안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다. 학생측에서 주장한 부분으로 이상하게도 별 무리없이 받아들여졌으나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라는 다소 객관적인 문구로 손질되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구성: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생처장, 여학생처장, 기획실장이 참여하고 교수, 학생(총학, 총여, 대학원총), 교직원이 각각 3인씩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은 각각 학생과 교직원이 연루된 사건에 관한 회의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소 7인, 최대 13인이 참여하게 되는데 일단 인원이 너무 많고 당연직 위원도 많은 편이다.

징계 및 조치: 학교측 가안에 따르면 성폭력 대책위는 학교의 각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발의할 수만 있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정학, 제적, 감봉 등의 다소 수위가 높은 것들뿐인데다 가해자 재교육의 효과도 전혀 없기 때문에 연성뿌연에서는 공개실명사과, 재교육, 자원봉사 등의 처벌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측에 이러한 자체 처벌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학교측은 징계 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자체 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하다가 결국 '조치'라는 표현으로 고치고 이를 받아들였다.



중앙대학교 2캠퍼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 방향

96년 서울대 사건이후로 대학내의 성폭력 사건이 하나둘씩 밝혀지게 되었다. 그런 사건들을 밝혀내는 과정속에서 많은 대학들의 총여학생회나 여성위원회등 여성운동을 하는 학우들 속에서 성폭력 학칙을 제정해야 한 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교들이 성폭력 학칙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학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중앙대학교는 약간 특수성을 지닌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어서 학생운동도 한발 늦을 뿐더러 학우들의 생각도 많이 고립되어있다. 또 총여학생회가 97년도와 98년도 비어 있으므로 해서 성폭력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성폭력과 성희롱이 발생하여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특성상 예술대와 음대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혀지기는 했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런 사실들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예술대의 경 우는 선후배 사이의 관계라든지 그런 명목상으로 사건들을 은폐시키고 있으며 음대의 경우는 교수님들과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학점과 졸업후의 진로 선택을 위하여 피해학우들은 은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99년도에 14대 총여학생회가 건설되면서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일이니만큼 어려움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1학기에 설문지 조사를 했지만 다른 사업들로 인하여 밀려나고 만 것이다. 그래서 2학기에는 총여내에 성폭력학칙제정팀을 따로 꾸려서 일을 해나가기로 했다. 그럼으로 2학기 에 설문지 통계를 내본 결과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만무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이후 포럼도 행하면서 차차 성폭력 근절운동과 성폭력 학칙제정에 관한 것들을 대중화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가운데 통학버스에서의 성 추행 사건으로 성폭력 학칙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학교측에서도 교육부에서 성폭력 학칙을 하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그런지 별다른 제제는 가하지 않았다. 결국 99년도에는 처음으로 접 하는 성폭력 근절에 대하여 알려내는 것이 주가 되었고 그에 있어 성폭력 학칙에 필요하다는 것을 학우들에 게 조금 인식시키는 정도에 불과했다.

2000년도에 15대 총여학생회가 건설되면서 14대의 사업을 물려받아 학기초에 가안이 나왔으나 등록금 투쟁 이 길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학교와도 이야기 할 수 없었고 학우들에게도 알려낼 수 없었다. 15대 총여에서는 좀더 성폭력 근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우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학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측에 요구안 으로 성폭력학칙을 내세워 이야기 할 것을 노력했다. 그러하기에 2000년 대동제 기간에 총여에서는 학칙에 관한 페스티벌을 열어 많은 학우들에게 무겁게만 여겨지던 학내 성폭력 근절 학칙을 알려내고 여러 가지 이 벤트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짚어 주고자 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등 다른 학교들이 학칙을 제 정했듯이 우리 중앙대학교 학교측에서도 학칙을 제정할 의사가 있다고 총여에 알려 왔다. 그러므로 총여에서 만들었던 학칙가안을 몇몇 교수님과 검토한 후 학교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리고 몇 개의 사건이 접수되어 사 건을 해결하고 공론화 함으로 학우들 사이에서 학칙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었다. 앞으로 학칙이 제정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얼마나 좋고 올바른 학칙이 만들어지느냐 그 과정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총 여학생회는 이번에 꼭 학칙이 제정되지 못할지언정 열심히 학칙제정 과정에 임할 것이다.



지금 중앙대학교의 상황은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던 성폭력 사건들이 이제는 총여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차차 학우들 속에서라도 이야기되고 있고 총여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공론화 되지는 않지만 많은 학우들이 총여로 상담을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학우들의 움직임 속에서 차차 성폭력 근절에 대한 생각들은 커져 나갈 것이고 점차 피해자들은 사건들을 은폐시키려고 하지 않고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사건들을 해결해 나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과정속에서 성폭력 근절운동이 자연히 일어나고 또한 성폭력도 근 절되지 않을까요??





학칙제정 사례

서울대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 과정

『서울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 완성되기까지.

관악여성모임연대 집행부 이김보명

0. 학칙의 필요성이 제기되다.

학내에서 처음으로 성폭력 관련 규정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시기는 93년 신고수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공동대책위 활동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학내에서 반성폭력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여성주의적 세력이 미약했고 본부측 역시 신고수 사건 외에도 많은 (교수) 성폭력 사건이 학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던 때문에 학칙은 학교측의 완강한 반대와 그에 대응할 현실적인 역량의 부족으로 그 제정의 시기가 유보되었다.

그러나 93년-96년 사이의 신고수사건 공대위의 활동 그리고 96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97년 학대 구교수 사건 등을 통하면서 그간 학내에서는 여성운동 모임들이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반성폭력담론의 기반도 조금씩 다져지게 되었다. 본격적인 학칙제정 운동은 97년 2학기의 총학생회 선거 시기를 통해 시작되었다. 당시 관악여성모임연대(이하 관악여모)는 모든 선본에 반성폭력학칙제정은 다음 해 총학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모든 선본들의 공약으로 '반성폭력학칙제정'이 약속되었다. 다음해인 98년은 관악여모와 총학생회의 주도, 그리고 각 단대학생회와 각 단대여성모임의 활동 속에서 반성폭력운동이 본격적으로 학내에서 드러난 시기다.

1. 우리들 안에서부터 - 단대 학생회칙 및 자치규약 제정

98년의 반성폭력운동은 학교측을 대상으로 하는 학칙제정의 요구와 더불어 각 단대에서 진행된 반성폭력 내규 혹은 학생회칙 제정을 위한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98년 4월 사회대에서는 활동단 체계를 통해 반성폭력 회칙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학우들의 총투표를 통해 학생회칙에 반성폭력관련 규정을 포함하였다. 그 외 인문대와 공대, 자연대 등에서도 같은 흐름이 있었으며 각각 내규나 회칙 등을 통해 반성폭력 규정을 만들어 갔으며 그 방식은 앞서 말한 총투표 형식(주로 학생회칙으로 진행될 때)도 있었지만 자체 토론회나 담론 형성을 통한 자치규약 제정도 있었다. 이같은 성과는 이후 학내여성운동 단위에서 성폭력사건을 접수받고 처리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실질적인 규정이 있었기에 그에 따라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기도 하였고 또한 이같은 제정과정을 통해 학생사회에서 반성폭력운동이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기에 실제로 사건이 신고되고 처리되는 횟수와 수준 또한 급속히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학내에서는 반성폭력운동의 담론이 실질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다. 추상적인 혹은 도덕적인 반성폭력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왜 피해자중심주의가 확보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왜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 각 단대에서의 학생회칙과 자치규약 제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적으로 내규나 회칙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터나 현장활동 등을 위한 반성폭력내규를 제정할 때 지금까지 쌓여온 문제의식들이 크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반성폭력운동은 제도적 결과물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합의해 내는 과정과 활동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대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기 위하여 - 학칙제정

학칙은 서울대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제기되었다. 그 시작은 앞서 말했듯이 신고수 사건, 구교수 사건 등으로 인해 불거진 교수-학생간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학생사회의 성폭력은 앞서 말한 학생회칙이나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반면 교수·교직원 성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사회의 성폭력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사건의 신고와 높아지는 피해자들의 의식수준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생각할 때 언제까지나 학내 여성단위에서 성폭력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학칙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진다. 보다 정교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물질적인 기반이 있으며, 교수·교직원 등의 구성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장점과 필요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제력이 있다.

3. 학칙제정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관악의 학칙제정과정은 3년 가까이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활동주체가 변화해 왔기에 그 생생한 제정과정이나 구체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활동주체의 이월과 함께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들이 많다.

(1) 학칙제정과정에서의 쟁점

① 이름 만들기

지금의 서울대 학칙은 『서울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다. 우선 성폭력 관련 예방 및 처리 모두를 포괄하는 규정으로서 학칙의 위상을 갖춘 것은 바람직하다. 이에 준해 학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확장된 반성폭력운동을 독자적으로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희롱·성폭력'이라는 애매하고 번거로운 이름이다. 이는 '성폭력'으로 개념을 통합하려는 학생측의 의견과 '성폭력은 너무 과격하다'는 소심함 및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쓴다'는 소박한 학교측의 발상이 지난하게 부딪쳐 온 합작물이다. 사실 이름이 별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스운 결과물이 여실히 드러내는 성폭력에 대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반응을 알 수 있다. '폭력'과 '희롱'을 구분하는 그 태도에는 성폭력에 대한 '객관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본부측의 시각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② 성폭력의 범위 및 판단기준

지난 3년간의 반성폭력 운동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무엇보다도 '성폭력 개념의 확장 및 피해자중심주의 확립'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물리적인 성폭력만을 상정하던 협소한 인식에서 언어성폭력, 시선폭력, 집단적 놀이문화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여성차별사안에까지 성폭력이란 이름이 따라붙게 되었다. 서울대의 학칙에서는 성폭력 기준을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성폭력 유형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여성차별 행위의 일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압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학/교/별/반/성/폭/력/학/칙/운/동/사/례/총/화/글

특히 성폭력의 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에 놓는 것은 본부측은 물론 학생대중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낳은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를 '과도하게 예민한 여성'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편견을 반영하는 반응이었다. 또한 '법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부측의 입장은 끝끝내 충돌지점으로 남아 마지막의 상담소 시행세칙 제정 과정에서도 '사건공개'에 대한 강경한 반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2) 학생사회의 전략

학칙제정의 초기과정은 권위적인 본부측과의 소모적인 말싸움에 상당한 역량을 소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애초에 학칙제정의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본부측의 상대로 학칙의 필요성은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엄청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며 결과적으로 3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학칙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부측과의 논의테이블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학생측의 전략은 '학생사회에서의 담론형성을 통한 압력넣기'였다. 98년의 단대별 학생회칙 및 내규제정을 통한 반성폭력운동 과정과 99년의 '바로지금' 활동단의 성과는 실제로 본부측의 입장이 변화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98년의 학칙제정활동단이 만들어내는 4000이 넘는 결의서명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적 성과물은 본부측이 학생측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3) 학칙의 내용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들

학칙은 무엇보다 그 '적용범위'(성폭력의 범위, 학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내구성원의 범위)와 사건에 대한 '처리규정'을 세심하고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성폭력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확장하는 것, 그리고 학칙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학내 모든 구성원이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는 학칙에 의한 법적 효력을 행사하고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성폭력 판단기준에 피해자중심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건처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일관된 통로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사건처리 기간중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립하는 것 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상담소나 기타 관련기구를 만들 때에는 그 조직을 명료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서울대의 경우 상담소장과 부소장, 운영위원, 조사위원, 상근자 등으로 상담소의 조직이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상담소의 운영 및 상담소 시행세칙의 개정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조사위원회는 실제로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기구이다.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그리고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위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사위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하고 일정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본부측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신고를 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상근자의 경우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능한 '여성주의적 시각' 및 '성폭력관련 활동경험' 등을 상근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기구의 경우 대부분 석·박사를 기준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석·박사 범위 내에서 위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객관적인' 지표를 낮추더라도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상근자를 확보하도록 학교측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학/교/별/반/성/폭/력/학/칙/운/동/사/례/총/화/글

4. 상담소의 권한확장 및 독립성 확보

서울대의 경우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상담소를 학생생활연구소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상담소는 애초에 목적으로 한 전문적인 사건처리 및 반성폭력 사업 등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같은 결과는 실제로도 우려되는 지점 중의 하나다.

특히 피해자 상담과 가해자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상담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일인데 막상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애초에 확실한 재정확보와 독립성을 담보로 하는 상담소 개소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상담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같은 합의를 유지시켜 가는 것도 중요하다.

학칙은 학칙일 뿐이다.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그 어수선한 뒷모습에도 불구하고 반갑다. 이제 새로운 반성폭력운동을 만들어 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학내 여성운동 진영의 역량이 상당부분 학칙제정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그 부담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 훨씬 더 급진적이고 자유로운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생각한다. (분량은 넘겼지만) 짧은 글이 다른 곳의 여성주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반(反)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을 되돌아보며

외대 13대 여학생위원회 두나

2000년 외대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운동을 진행해 학칙 제정이라는 성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를 빼면, 실제로 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과연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대에서는 생소한 성폭력 담론을 처음 대중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일단 끌어들이는 분위기는 부풀었지만, 특히 성폭력 재개념화에 대해서 좀처럼 납득을 하지 못하고 실명공개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가해자의 인권을 부르짖곤 하였다. 심지어 모단대 학생회장은 피해자 위주 원칙의 설명을 듣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여학생 집행부의 손을 덥석 잡고 "야! 이것도 성폭력이나?"고 물으며 비아냥거리는 등, 이런 사례들은 책 한권을 써도 모자랄 것이다. 시비만 걸리는 유아들을 붙잡고 설득하려면 짜증밖에 나는 게 없다. 그러나 화장실 설문지와 성폭력 기획대자보는 여학생들의 잊고 싶던 공통경험을 끌어내어 이론과 연계하는 데 성공한 좋은 방법이었다. 분노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역력히 드러날 정도였다. 3월 말에 '학내 성폭력 근절 학칙제정을 위한 외대 운동본부'를 꾸림으로써 상당히 버거운 작업량과 대중사업을 무사히 소화하고 내부교양으로 이론을 좀더 탄탄히 다졌다.

(빈도가 높은 연습문제들을 뽑아 실전에 대비하기도 했다. '처다만 봐도 성폭력입니까?' '여자가 고의로 성폭력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등등)

운동본부는 강연회, 모의재판과 공청회, 서명운동, 뱃지판매, 대동제 선전전 등 본격적으로 대중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중, 실제사례에다 구체성을 덧붙인 대본을 운동본부원들이 며칠동안 외우고 연습해서 모의재판을 꾸렸는데, 학우들이 배심원이 되어 직접 판결하는 형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려고 애썼다. (그 때 뻔뻔스러운 가해자 역할을 애드립까지 넣어가며 마치 자신의 본성처럼 연기했던 본부원은 그 뒤 완전히 얼굴이 적혔다 한다) 이처럼 힘닿는대로 여러가지 했지만 무엇보다 조직이 부족했고 운동의 효과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지 못했다.

화장실 설문조사 해보면 아무것도 눈에 안 띄었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1학기 말 대학 평의회에서 반성폭력 학칙제정이 안건으로 올려졌고 그 때부터가 길고도 지루한 협상과정의 시작이었다. 2학기 말에야 협상이 종결되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학칙에서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 것이다. 사전 작업이 더욱 중요한 것이 협상인 것 같다. 협상에 앞서 미리 다양한 대안적인 안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학생처 사람에게 때에 따라 살벌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 학칙을 계기로 지금부터 들어오는 새내기들에게 무엇이 성폭력인지부터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그때부터가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일은 새터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내규제정 움직임을 만들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학생회 역할 강제-먼저 성폭력 재생산의 금지부터-를 위한 싸움이 될 것이다.



동국대학교 반 성폭력 학칙 제정과정 정리

1. 97년도 12대 총여학생회는 공약 사항으로 성폭력 신고 센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번의 세미나를 가지고 회의를 가지고 하였으나 당시 총여내 성폭력 신고 센터를 담당할 집국도 마련되지 못했고, 외부에서 전문 간사를 초빙할 여건도 되지 못하였다. 그후 13대 총여가 세워져 이것을 계속 추진해 가려 했으나, 당시 총학생회의 불법 선거로 인해 중앙단위 선거 전체가 무산이 되었고, 그 다음해 진행되었던 보궐선거 역시 무산 되면서 2년동안의 공백 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여내 조직화의 문제 때문에 다른 일정을 진행 할수 가 없는 상태였다.

2. 드디어 99년 봄에 선거를 통해 13대 총여학생회가 세워졌다. 하지만 2년간, 동아내 여성운동 공간이 사라지면서 그만큼 학내에서 총여학생회의 위상은 극히 축소되고, 학우들 간에서도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었다. 공약 사항에 반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이 들어 있긴 하였지만, 일상 사업으로 진행되는 선전 작업과 3일간에 걸친 서명 운동 이상의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동아내에 여성 운동공간의 재성을 학우들에게 알릴수 있었고, 미약하긴 하지만 성폭력에 대해 알릴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의미는 부여 할수 있을 것이다.

3. 2000년 14대 총여학생회에서 역시 정대 총여학생회의 공약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99년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발생 하였던 성폭력 사건을 기반으로 경주 총여학생회와 함께 반 성폭력 학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다. 경주 캠퍼스에서는 학생 대표자 회의를 거쳐 학칙 가안을 통과 시켰으나, 본 캠퍼스인 서울 캠퍼스에서 이렇다한 움직임이 없고, 본 캠퍼스의 승인이 없다면 학칙이 만들어 질수 없다 하여 거절 되었다. 이후 서울캠퍼스 총여 학생회와 함께 연대회의에서 만들어졌던 학칙 가안을 가지고 학교와 합의하던 도중, 경주캠퍼스 총여 학생회가 와해 되고, 서울 캠퍼스 총여학생회에서도 내부에서 불화가 생기므로써 제대로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학기 사회학과 K교수 성폭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한번 반 성폭력 학칙을 제정 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K교수를 해임 시키기 위한 선전전과 침묵시위가 이루어 졌고, 이를 계기로 학우들에게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일반적이긴 했지만 활발하게 알릴수 있었다. 결국 K교수는 해임이 되었지만, 해임에 불응하여 현재 교육부에 제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회도 더 이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 15대 총여학생회 선거준비로 학칙 제정을 위한 모든 활동이 중단 되었다.

4. 15대 총여학생회 공약에도 역시 반 성폭력 학칙 제정을 내 놓았다. 이번해 에는 좀더 확실하게 학칙이 성립되기 어렵다면 각 단과대 자치규약이라도 제정 하기 위해 현재 총 중앙 위원회 회의에 각 단과대 마다 여성국이나 여성학회를 제안하는 중이다. 그리고 2학기 여성학 강좌가 생기는 바, 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어 학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져가려고 한다.

현재 제안하고 있는 여성국이나 여성학회가 세워진다면 주체들을 중심으로 2학기 공청회 사업을 같이 가져가 좀더 확실하게 학칙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 캠퍼스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이루어 질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주 총여학생회와 현재 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주 총여학생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 캠퍼스 총학생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소통에 관한 문제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학/교/별/반/성/폭/력/학/칙/운/동/사/례/총/화/글

서울시립대 반성폭력 학칙제정 운동 흐름

1995년 (11대)

학교측에 성과 관련된 교양 과정 확대, 성폭력 신고 및 상담요원 확대, 여학생과 관련된 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여학생처 설치 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호신술 강좌 개설 이외의 성과는 없었다.

1996년 (12대)

학교측에 성폭력 상담소 설치, 여성학 강의 증설, 학생생활연구소 내에 여성 전문 요원 배치 등을 요구하였다.

1997년 (13대)

처음으로 학교측에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학칙제정은 학교측에서 시기 상조 등의 이유로 어려웠다. 이외에 여학생 상담실이란 이름으로 성폭력 상담실 개설되었고, <성과 사랑> 강좌 개설되었다.

1998년 (14대)

학교측에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은 시기 상조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학교측은 3월 보궐 선거 진행 중에 성폭력 특별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전달하였다. 선거가 끝나고 학생회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 규정 등을 만들었다. 이후에 학교측과 협의를 거쳐, 9월에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 발족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학생 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1999년 (15대)

학교측에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이에 대한 학교측 움직임은 없었다. 총여에서는 학칙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은 없었고, 여론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한 활동으로는 성의식 설문조사, 성과 친해지기 주간, 성폭력 사건 처리후 학내 성폭력 실태와 반성폭력 학칙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예대위 마지막 회의(12월에 열림, 학생위원은 16대 총여가 참여)에서는 예대위 규정안 세칙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었으나 위원장이 바뀐데다, 시기가 좋지 않아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다.

2000년 (16대)

16대 총여학생회는 상반기에는 학칙제정을 위한 여론화 작업,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학칙 관련 작업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시켰다. 그래서 1학기에는 대동제 등을 통해서 학칙의 필요성등을 알려냈고, 스티커 설문 등을 했다.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이하 예대위) 규정안 세칙뿐만 아니라 규정안의 새로운 정비와 학칙 제정에 대한 논의를 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6월에 열린 예대위 회의를 제안을 했다. 당시 예대위 회의에서 총여학생회의 제안과, 99년 말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안의 세칙 마련과 학칙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소위원회(교수위원, 학생위원 2인)를 꾸려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예대위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총여학생회는 8월 초 다른 학생회 사람들을 꾸려서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총여, 총학, 단대 주체, 여성 관련 소모임 등 총 6단위)에서 규정안 개정 가안과 학칙 가안을 완성시켰다. 9월말쯤 이 가안과 다른 학교 학칙 가안을 가지고 소위원회 몇 차례 모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 예대위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회의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뤄지게 되었다).

총여학생회는 10월에 학칙과 관련한 여론화 사업을 진행시켰고, 그 가운데에는 공청회를 열었으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못했다. 결국 예대위 회의는 12월에 열렸고, 학칙 가안 검토가 있었다.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일단 법학과 교수들에게 검토를 맡기기로 결정되었다. 학생들이 만든 학칙 가안에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상이나, 학교 규정안과 충돌되는 부분은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덧붙여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고, 그 시기는 새학기가 시작한 이후에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학칙안은 완성시키자는 것이 중론이었다.

예대위의 문제는 위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수 위원들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여학생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회의 진행은 거의



학/교/별/반/성/폭/력/학/칙/운/동/사/례/총/화/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정도면 괜찮겠네." 정도, "이건 우리 학교 여건상(서울시라는 재단, 교직원(교수포함)이 공무원이라는 특성) 안돼." 정도의 대화만 오가는 상태였다. 2000년도는 교수 관련 성폭력 사건이 있어서, 더욱 논의가 뒤로 밀리고, 교수들의 명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클 뿐이며, 결국 음악학과 윤**교수 사건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는 계정 등록을 통해서만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무기명을 막기 위한 수단임). 그리고 어떤 의견이 개진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총여학생회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이다. 일은 떠맡아 하면서 위원회까지 신경쓰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대위 자체 위상이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상담소 등 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본 규정안은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서 마련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 가안입니다. 연대회의에서는 이미 98년에 학칙가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학칙제정운동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작단계에 있는 단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학칙 가안인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어렵지만 다시 학칙 가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학내에서 학칙제정 운동을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학칙제정운동을 하는 단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7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담론화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이 조항에 명시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시행과정안에서 굴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

제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O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학내 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안의 목적은 비단 성폭력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에 대한 의미규정에서부터 사건의 해결 및 처리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이 규정안은, 기존의 불합리하고 남성중심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변화시켜 새로운 성문화를 구성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규정안은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피해자의 권리확보 및 보호,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소의 활동등도 포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정의)

여기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언행과 요구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②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수,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행,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③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④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



성폭력은 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폭력이다. 따라서 규정안에서 명시하는 성폭력의 정의는 성적인 행위 (sexual violence)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항에서와 같이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폭력의 정의 속에는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권력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성차는 성별 권력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도 주지할 사실이다.

이 가안에서는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성폭력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성운동계에서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것처럼 성폭력의 판단여부와 그 심각성은 피해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실제로 학교측과 협상을 진행할 때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사회의 법제도적 인식이나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보편적이고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보편적이고 건전한 일반인'이란 가부장적인 남성주관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주관에 합리성과 전혀 동떨어진 단어가 아님은 명백하다. 덧붙이자면 성폭력의 문제에서 가해자의 의도성의 문제는 크게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가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가질 감정과 그녀/그의 상황을 고려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주관에 들어갈 때에만 '진정으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학교측과 학내 구성원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학칙 조항의 완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담론화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이 조항에 명시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시행과정안에서 굴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OO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이는 교수(외국인 교수, 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특정 가해자가 지목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범위 부분에서는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칙은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학교도 있으므로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괄호 안에 명시한 대상들까지 빠짐없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가안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학칙이 가해자 처벌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건해결의 노력에 있어서의 대학의 책임을 의무화하고 실제적인 피해자의 지원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까지 담보하는 것이기에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학교측과 규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데 별 무리가 없겠지만 실제로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중 일방만 해당 학교의 구성원일 경우 학교측에서 규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운용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가해자가 지목되지 않은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할 지라도 피해자가 학교측에 사건을 신고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장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 사건을 학교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는 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교측은 이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덧붙이자면, 고대생 집단 성폭력처럼 특정한 가해자를 지목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도 해결을 위한 대학측의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역시 규정안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은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피해자 중심주의'를 천명한 부분이다. 위의 정의 부분에서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의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듭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제5조 (피해자 권리확보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소속 대학교로부터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④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과정과 처리방안 등의 내용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많은 학교의 규정안 혹은 규정가안에 보면 이 부분을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회의에서는 다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인 '보호'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권리'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해자 권리확보'라고 명시하였다. 이 부분은 서울대 규정안을 많은 부분 참고하였다. 1항은 학교측이 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충분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항은 사건해결과정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다. 3항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피해자의 권리 부분이다. 4항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를 배제하는 사건 해결과정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또다른 의미의 폭력일 수 있다. 5 6항은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으로 역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제2장 담 당 기 관

담당 기관 부분은 크게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성격상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 성폭력 상담소는 집행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서울대는 이 부분이 본 가안과 좀 다른데 서울대의 경우 상담소 내에 조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제1절 성폭력상담소

제6조 (설치)

OO대학교는 학내에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상담소는 학내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다.

상담소가 실제적으로 그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의지와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유로도 독립적인 위상의 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된다. 그럼으로서 독립적인 학내기구로서 제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담당원의 교체나 채용의 부분에서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든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건의 신고 및 조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담소는 학내의 어느 요소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실제로는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처 등의 산하에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정안의 적용범위가 학생 뿐 아니라 교수, 교직원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학생생활 연구소의 산하에 두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류이다.

제7조 (구성)

- ① 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상담소에는 상담원, 직원을 둔다. 상담원은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상담원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OO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등으로 명시할 수도 있겠다.



제8조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접수된 사건에 대한 기록 및 보존

상담소는 피해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뿐 아니라 대학내 성문화를 개선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중점을 두어야 했다. 구체적인 예로서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섹터 교육, 정규 성교육 강좌나 소책자 발간 등의 업무를 해나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성문화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 규정안에서 이 부분까지 담보가 되어야 한다.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 ① 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 동수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을 전체 위원의 1/2이상으로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부분은 학교측과의 협상에서 가장 극심한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학교측에서 심사리 위원회에 학생참여를 허락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위원의 성폭력 대책위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1항의 경우는 원칙만을 명시한 것으로 학교에 따라 구체적인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2항의 자문위원 규정은 성폭력 대책위 위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1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사건 해결의 전과정에 대한 기록 및 보존



제12조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정기회의는 기간 신고되었던 성폭력 사건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 학기 2회 정도가 적당하다. 보통 학교측에서는 매 학기 1회 정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주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소집되는데 신속히 소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예, 사건을 보고한 때로부터 0일 이내) 2항에는 위원회의 의결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더욱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시하였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13조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③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므로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해야 하고 신고자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의 상시적인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14조 (심의·의결)

-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사건을 보고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증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1항에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회의 소집 기한을 명시하였다.

제15조 (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
 4.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5.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
6.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항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2항은 가해자에 대한 여타 조치를, 3항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1항에서 해당징계권자라 함은, 학칙이 제정된 대학내 해당 기관외에도 가해자에게 징계권을 가지고 이를 집행할 수 학교 외부의 기관도 포함한다.

학내의 경우에는, 학생은 학생상벌위원회,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 등으로 학내 구성원에 대한 징계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직접 징계를 내릴 수는 없고 해당징계권자에게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학교 외부의 사람일 경우, 대학측에서 징계권 발의를 꺼릴 가능성이 많기에 유의해야 한다.

2항은 1항의 징계조치에 대한 한계지점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징계란 대부분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의식변화 등의 효과가 없으므로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하겠다. 단, 이는 가해자가 학내 구성원일 때에만 실제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에 대학 외부에 가해자가 존재할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 및 조치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하다.

3항은 피해자의 법적 구제 비용에 대한 지급 부분인데 제5조 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해당 학교는 학교의 구성원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며 법정 투쟁에 사용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6조 (사건공개 의 원칙)

위원회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일주일 이상 학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 학내 구성원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대학내 성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성폭력을 예방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사건 공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사건을 공개할 때 피해자의 신원은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공개의 내용(가해자의 신원과 자세한 사건정황 등)과 공개의 공간적 범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17조 (시효)

성폭력 사건에는 시효를 따로 두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고를 결심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시효가 없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제18조 (경비)

OO대학교는 상담소와 위원회의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제19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연/대/회/의/예/서/제/시/하/는/학/칙/가/안/과/예/지/글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보/론/-2000년/성/폭/력/사/례/및/예/결/과/정

2000년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을 통해 본 어려움

이 글은 성폭력 사건 해결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위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학내 여성운동단위에서 사건을 해결해 온 방식을 정리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글이다.

여기에 게재된 사례는 4기 연대회의에 참여한 학내 여성운동단위에 지난 1년간 제소되었던 사건들이다. 사례는 우선 가해자의 유형에 따라 학생에 의한 성폭력, 교수/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으로 나누었으며 유형별 성폭력 부분을 따로 두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과 스토킹, 그리고 화장실 성폭력 사건을 정리해 보았다.

<학내 여성운동단위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해야 할 일>

1. 사건이 신고된 직후 - 피해자로부터 사건진술서 받기, 비대위 꾸리기

우선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자세한 사건 진술서를 받고 사건 해결을 위한 비대위를 꾸린다. 비대위는 일차적으로 총여학생회나 여성모임, 사건이 총여학생회나 여성모임으로 신고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된 단위(예를 들면 단대 학생회), 피해자의 단대 학생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단대 학생회가 비대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과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동체의 구성원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주의할 것은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피해자(제소자)와 가해자(피제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2. 사건규정

비대위는 우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건 진술서를 바탕으로 사건 규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다.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대리의 역할을 비대위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폭력 사건을 마주칠 때 상정하게 되는 객관성, 혹은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기존의 이데올로기가 내재화되어 있는 것인가를 성찰적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든가 '왜 그 시간까지 (가해자와) 같이 있었냐'는 식의 피해자 유발론이 객관, 혹은 보편적 상식을 가장한 남성의 시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사건 규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비대위에서 일방적으로 사건을 규정하고 그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건 규정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규정이 끝나고 그것을 문서로 정리할 경우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 가해자라는 단어를 써서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 가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시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소자, 피제소자, 혹은 신고자, 피신고자라는 단어를 쓰도록 한다.



3. 요구안 작성

사건 규정이 끝나면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을 작성한다. 요구안에는 성폭력 사건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가해자의 공식적인 사과(실명공개사과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부담스러워 할 경우 공식적인 사과문을 피해자와 비대위에 보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대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에 기본이 되어온 부분이 실명공개사과이지만 피해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에도 절대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또한 실명공개사과라는 요구를 할 경우 피해자와 비대위가 받을 수 있는 유형·무형의 부담도 충분히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증거 확보

앞에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도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비대위측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 특히 강간과 간이 의료적인 증거를 채취해야 하는 경우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된 산부인과를 소개해주고 증거를 채취하는 과정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확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또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증인 확보도 확인해야 하며 참고인들에게 진술도 받아놓아야 한다.

5. 요구안 전달

요구안이 완전히 작성되면 요구안과 비대위의 입장에서 기술한 사건규정을 가해자에게 전달한다. 요구안을 전달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안을 전달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요구안을 전달할 수도 있다.

문서로 요구안과 사건규정을 전달할 경우에 문서의 내용을 증명받을 수 있고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다. 내용증명은 3부로 우체국/본인/받는 사람이 모두 보관하게 된다. 내용증명의 발신 주소는 반드시 피해자의 주소일 필요는 없고 단위의 주소여도 상관없다. 가해자와 직접 연락해서 만날 경우에는 반드시 만나자는 통화도 녹음을 해 두어야 하고 만나는 당시에도 공식적인 자리로 제한해서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한다.

피해자나 비대위에 가해자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가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절대 비공식적으로는 비대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만나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비대위가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해 두어야 한다.

6. 합의 과정

6-1. 요구안 받아들일 경우

요구안이 전달된 후 가해자와 학교당국이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깔끔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될테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가해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가해자의 서명이 포함된 합의문을 받아둔다. 합의문에는 요구안이행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가해자가 인정한 사실 일체에 대해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함께 받아두어야 한다.

6-2. 요구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건 규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가장 난감한 상황이다. 사건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비대위와 피해자가 수집한 증거와 자료들을 가해자에게 보여주며 사건을 인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들이 비밀비



재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비대위가 피해자의 의견대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제들을 통해서 유동성있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학교의 여성운동단위나 비대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내의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게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인정하고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지원성명을 제안함으로써 가해자측에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사건 규정은 인정하지만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건규정을 인정하는 경우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사건규정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규정에 가해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요구안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 조리있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학교에서 제대로 사건이 처리된 예나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주면서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의 사건지원성명을 제안한다거나 상담소의 입장 등을 전달함으로써 요구안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또한 사건규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기제들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구안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요구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이다. 가해자와의 면담과정은 비대위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요구안을 수정하는 부분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배제될 수도 있다. 비대위가 피해자로부터 사건처리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요구안을 합의하는 중요한 과정에 피해자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부분들

가해자가 사건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건규정은 동의하는데 요구안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합의 없이 사건을 공개하고 서명운동 등을 통한 여론전을 시작함으로써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사건공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학생에 의한 성폭력>

학생에 의한 성폭력이 단위에 신고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의 절차를 거쳐 해결한다. 지금까지 대학내 여성운동단위에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때 가해자에게 가해왔던 처벌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었다.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것 혹은 가해자는 처벌

-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사과 - 공개실명사과
-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여성단체에서의 일정기간 자원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접근 금지

사안에 따라 법적·행정적 처벌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처벌은 위와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필요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폭력·가해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방식(이를테면 강의실 유세)도 사용되곤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단죄의 의미도 있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폭력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며 이후 다시 성폭력을 지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비대위에서는 간단한 사건 경위와 사건에 대한 규정, 사건에 대한 입장 등을 서술한 자료를 게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사건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다. 그러면 작년에 여성단위에 제소되었던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사건해결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들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가해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고대 야학 성폭력사건 야학 뒷풀이 후 잠이든 피해자는 가해자가 위에서 누르는 느낌에 깨어 저항했으나 가해자는 계속 집착을 시도하였다. 야학 내에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자 피해자가 여위에 신고하였다.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가해자로부터 사과문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경영대 학장측에 학칙 처벌을 요청했으나 성폭력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종결되었다. 이후 실명공개로 자보화하였다.

중대 성폭력 사건 2000년 2학기 초 문예창작학과에서 과동아리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과학생화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고, 다가가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발뺌했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며 피해자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뒤늦게 신고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1년 휴학, 사건공개, 사과대자보 등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엇갈려 사건정황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대질심문을 통해 사건진실여부를 파악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이행하기로 했다. 총여에서는 실명사과대자보를 붙이고 가해자에게는 2001년 1학기부터 1년 동안 휴학과 함께 피해자가 활동하는 곳에 접근을 금지시켰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가해자들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 학내 단위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 제시, 정황에 대한 설명,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문제 등을 통해 요구안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례1의 경우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아 학교측에 처벌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사건공개로 마무리된 경우인데 실제로 가해자가 끝까지 발뺌하는 경우에는 사건 공개가 일종의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명공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례2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뒤늦게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요구안을 받아들인 경우이다.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증거와 자세한 진술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가해자가 군인, 유학생 등인 경우

고대 군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군휴가 중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불에 걸쳐 자취방에 침입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연행되었고 피해자 2명은 각각 가해자측과 합의하였고 실명공개로 자보화되었다.

서울대 북경대 유학생 술자리 성폭력 사건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 신고 받은 사건으로 가해자는 북경대 유학생으로 방학 중 서울에 있으면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가해자와 그 후배가 떠나기 전날 있었던 하숙집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가해자는 2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더듬는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은 다음날 새벽에 신고되었다. 가해자와는 처음에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본 후 사실을 인정했고 이 사건은 관악과 가해자가 졸업한 학교에 공개되었다. 가해자는 북경에서 E-mail로 상담을 받고 있다.

가해자가 군인이나 유학생 등인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이후 처벌 단계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명공개사과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E-mail을 이용하거나 휴가·귀국 기간을 이용하여 재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

연대 법대생 사건 가해자(법대 재학 중)와 피해자(타학교생)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가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가해자는 이를 만취 상태여서 그랬던 것처럼 행동했다. 피해자는 기분 좋게 헤어지려고 그 자리에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으나 이후 이 사건을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라 생각하고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건을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대리인, 법대 학생회, 총여학생회가 모여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되어 사건이 해결되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비공식적인 사과문을 쓰고, 비대위 명의로 사건경위와 해결과정을 담은 자료를 법대 내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해자는 자발적으로 여성단체에서 일정기간(최소 2달간) 동안 자원봉사를 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의 자원봉사는 단체와의 연결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성대 서울대 치대 술자리 성폭력 사건 같은 동아리 선배의 친구들(서울 치대 2명)과 술자리중 "너 오늘 내 밑에 끼워볼래?", "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등등의 이야기로 계속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느끼는 언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집에 가려 하자 힘으로 위협을 가했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 친구가 항의하자 "넌 모나"며 피해자 친구를 밀어 물리적 상해를 입혔다. 본 사건은 성대 총여에 접수되어 가해자가 서울대와 성균관대에 사과 대자보를 붙이고 물리적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였고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받았다.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두 학교의 단위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 측 단위는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해자와의 소통을 주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가해자 측 단위는 가해자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공개되고 처벌역시 가해자가 생활하는 단위에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 단위에 사건을 제소한 경우(위의 연대 사례와 같이)나 어느 한 쪽 학교에 이 사건을 처리할 만한 여성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한 단위가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 때에 따라서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학교간의 대결 혹은 신경전적인 양상으로 변질 우려도 있다.

가해자가 요구 및 처벌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대 전화 성폭력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가하였다. 이후 발신자 추적으로 잡힌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 작성하였다. 그러나 여위에 3차에 걸친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성실히 임하지 않아 종결되었다. 실명공개사과로 자보화되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요구안을 받아들이지만 나중에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요구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요구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하지않을 경우 어떠한 가중처벌을 가할 것인지 각서를 작성해 놓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단위가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많다.

가해자가 1대 사실을 축소하려 한 경우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성폭력 사건 술자리를 끝내고 같은 방에서 잠든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해서 더듬는 행동을 했다. 사건은 신고된 후 신속하게 공개되었으나 1차 공개 후 가해자가 사건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사실확인절차를 거친 후 2차로 공개되는 과정을 겪었으며 직접적인 가해자 뿐 아니라 당시 인문대 학생회 집행부 중 2인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중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차 가해자들의 사과문도 게시되었던 바 있다. 가해자가 인문대 학생회장이라는 점과 사실축소의 과정, 그리고 합의중용의 행위 등이 복합되면서 이 사건은 한 달 가까이 공방을 벌였으며 결국 사건공개와 가해자 사과문 그리고 2차 가해자 사과문이 게시되고 당시 인문대 학생회 전체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은 재교육 과정을 끝냈다.



보/론/-2000년/성/폭/력/사/례/및/예/결/과/정

위의 사례는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축소하려 한 것뿐만 아니라 비대위와 피해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가해자의 주변인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중용하는 2차 가해를 가한 점, 가해자가 학생회장인 점 등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었던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는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해야하고 최대한 자세한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차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막기는 어렵지만 역시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학생회장 등으로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인 경우, 조직 보위의 논리 등으로 인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성폭력 사건을 드러냄으로써 학생운동의 도덕성이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다하여 사건을 공개한 여성단위를 비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집단적 성폭력의 경우

고대 연대응원단 사건, 고연전 응원OT에서 연대 부응원단장이 "고대 여학우들, 그렇게 방방 뛰어서 누가 데려가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하였다. 연대 총여와 함께 사과요청문을 보냈으나 대응이 없어 고대 내에서 규탄자보화하였다.

연대 새터 촌극 사건 상대 수련회에서 흔히 하는 촌극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한 반에서 준비한 촌극이 성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상대 학생회가 총여학생회에 신고하였고 이를 당시 시행되었던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새터 내규에 따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상대학생회, 상경4반 학생회가 비대위를 꾸렸으나 상경4반 내부적으로 촌극이 성폭력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해결되지 못했다.

집단적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가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성폭력 사건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결된다. 집단적 성폭력의 경우 집단 전체의 이름으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 집단 내부적으로 성폭력 혹은 성문화에 관한 세미나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집단적 성폭력의 경우 집단 내에서 성폭력임을 인정하지 않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럴 때는 여성단위에서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을 개진하는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논쟁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외

연대 성폭력적 발언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른 단대 소속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단대의 전공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평소 가해자의 성폭력적인 언행-쌍년, 미국 갑았으면 존나 술 먹어서 먹어버리고도 남았다, "(지나가는 여학생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재는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등의 발언을 한다거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위해 사망 락는 연습을 하라'는 등의 발언을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자주 했다고 한다.과 함께 시험부정을 일삼는 가해자의 태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사건을 총여학생회에 제소하였다. 총여학생회는 가해자 소속 단대 학생회, 피해자 소속 단대 학생회와 사건해결을 위한 비대위를 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을 거쳐 사건을 처리하였다. 피해자의 요구대로 비대위는 가해자에게 공개실명사과를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비대위의 설득으로 공개실명사과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서울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언어성폭력 사건 여름방학에 신고된 사건.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나랑 섹스할래?"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하였다. 또한 아침 경에는 "너 참 예쁘다", "거기다 섹시하기까지", "따먹구 싶어"라는 내용의 3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였다. 사건경과와 가해자의 사과문이 방학 중에 게시되었고 가해자는 재교육을 받으며 과활동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고 그에 합의하고 이행하였다.



보/론/-2000년/성/폭/력/사/례/및/예/결/과/정

새터 기간의 성폭력

새터기간은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대학문화를 접하는 장이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터 기간에는 공동체의 결속이 지나치게 강조될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고조되어 있으므로 분위기에 휩쓸려, 친밀감을 높인다는 이유로 많은 성폭력들이 묻혀져 왔다. 또한 새내기들은 새내기와 선배 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로 인해 성폭력임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문제제기 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응답패설, 정력가, 잦은 신체접촉 등으로 인해 '성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곳이 대학 공동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새터 기간에는 개인적인 성폭력도 많이 발생하지만 집단적인 성폭력이 특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집단적 성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지목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고 사건이 잘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재발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에서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기도 하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공동체 내의 왜곡된 성문화를 성찰함으로써 바꾸어 내고 새터 시기의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에서는 새터 시기에 성문화지킴이를 두어 새터 시기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모니터링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비하고 있다.

현장활동에서의 성폭력

현장활동(농활, 환활 등)기간에는 비교적 장기간을 함께 숙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 주민들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나 성차별적 관행들이 빈번히 있어왔다. 가사노동을 여학우들이 전담하는 식의 성별분업, 지역 주민들과의 술자리에서 여학우들로 하여금 술시중을 들게 하는 것, 여학우들 숙소로 남학우가 무단 침입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 등 현장활동 기간에도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활동 시기에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 하게 되면 민중연대의 의의를 호된다 하여 비판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학생간의 성폭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지역의 현장활동 주체 등에 의한 성폭력은 당시에 문제제기하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현장활동이 끝난 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현장활동 시에는 매일 해야 할 활동들이 많으므로 비대위를 꾸려 사건을 해결한다던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대 내부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양을 반드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 규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주민, 지역 주체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에는 이러한 현장활동시의 성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여성단위에서 현장활동대에 '현장활동 반성폭력 내규'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점차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보/론/-2000년/성/폭/력/사/례/및/예/결/과/정

2000년 현장활동 성폭력 사례

성대 00년 2월 현장활동을 위한 농민회 형님들과의 만남중 일어난 사건으로 회의후 뒷풀이가 끝나고 형님들과 한방에서 모여 자던중 일어났다. 농민회 형님이 옆에서 자던 여학우와 남학우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몸을 더듬다 그곳에 있던 총여학생회 일꾼에 의해서 신고 총여학생회에 접수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농민회 안에서 본 사건을 공개하였고, 가해자 형님이 농민회에서 제명되었다. 또 이후의 술자리에서 농민회 형님들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는 것을 약속 받았다.

서울대 마을잔치 날 술자리에서 남성 주민 1인이 농활대 여학생의 손을 잡고 무대로 나가 함께 마주보면서 춤을 출 것을 강권함. 해당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는 마지못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했지만, 그 시간 내내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에 시달림. 농활대 전체가 떠난 후 하루가 지나, 농활대 대표자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마을을 다시 찾아가 마을 청년회 대표와 사건사실을 공유했고, 청년회 대표의 주선으로 가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을 합의함.

서울대 농활수행 기간 중 남성농민들과 학생들 몇몇이 함께 한 술자리가 있었음.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남학생이었고 두 명만이 여학생이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한 여학생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권해 그 여학생이 노래를 부름. 그리고 나서 주민들은 또 다른 여학생에게도 노래를 권함. 여학생은 노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주민들은 노래할 것을 강권함. 당시의 분위기를 판단할 때, 그 자리의 여학생들은 이른바 '분위기를 띄워주는' 성격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노래를 강권하는 주민들을 완곡하게 말리면서 분위기를 무마시킴.

서울대 농활대 내부에서 환경형 성폭력이 발생함(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하지 못함). 농활대 내부에서 토론조를 구성, 해당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의 전반에 관해 논의를 진행함.

서울대 한 주민이 농활대 여학생들에게 '아가씨들이 왜 농활을 오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마치 농활에서 여학생은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함. 이에 몇몇 여학생들이 완곡한 항의의 말을 전했으나, 그런 질문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크게 상해 자리를 피함. 평가시간에 사건이 공유되었으나, 더 이상은 사건이 처리되지 않음.

연세대 환활을 진행하던 중 지역에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됨. 당시 총학생회장님이 여성이었는데 "총학생회장님 여자인 정신나간 학교가 어딘가 했더니 연대였다"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음. 환활에서 돌아온 후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려 하였으나 보내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됨.

교수/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교수/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교직원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자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학생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나 실질적으로 성적 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제기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사건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수업 시간의 성폭력적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제소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동안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여 공개하거나 학교당국에 제출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여성부나 교육부 등에 제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교수/교직원은 학교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교수/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학교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권이나 징계권이 학교측에 있으므로 학교측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학내 여성운동단위뿐만 아니라 총학생회가 비대위에 참여하거나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간사나 자문 격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 당국에 대해서는 교직원이나 교수에 의한 성폭력 같은 경우 교직원이나 교수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교직원이나 교수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그에 대한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를 확보할 때에도 교수나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사건에 대한 피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폭력적인 행동이나 발언들을 자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같은과 교수나 직원들, 그리고 조교,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교수나 교직원이 성폭력 사실을 시인하지 않거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학교 당국과의 장기적인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보/론/-2000년/성/폭/력/사/례/및/예/결/과/정

2000년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례

동국대 교수 성폭력 사건 지난 7월에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회학과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M씨와 일본에 학술 모임차 갔던 K교수는 사제지간으로 만나 같이 술자리를 가지고, 노래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K교수는 M씨에게 강제로 허를 집어 넣어 키스를 하려했고, 불루스 추가를 강제한 등의 성폭행을 하였다. 이에 대해 M씨는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K교수는 술에 취해 있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M씨는 전 사회학과 학생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 사회학과 내에서 비상대책 위원회를 세우고, 사회학과 교수 및 총여학생회와 함께 K교수 사과를 위한 시위를 가져갔다. 총장이하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국은 해임이 되었지만, 학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K교수는 교육부에 재심 신청을 했고, 전국의 사회학과 교수들로부터 지지 서명서를 받았다. 교육부에서 해임결정을 거부할 경우 다시 복직하게 된다.

서울대 교수 성폭력 사건 비대위를 통한 공식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학내에서 공개되었던 것 중 하나로 '황우석 교수 강의실 성폭력' 사건이 있다. 이는 황교수가 강의 중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고 회화화하는 발언을 계속하여 반복하였고, 이를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폭로로 학교측과 마찰을 빚으며 공개되었고, 황교수가 수업 중에 수강생들에게 문서와 구두로 사과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시대 최** 교수 언어적 성폭력 사건 교육 투쟁으로 본관 정거 당일 피해자는 선부 방송을 하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교수는 "야 뽀뽀이 너 이리 와봐, 너 아까 담배 피는데, 머리 뽀뽀 밀고 담배 피고 니가 여자냐? 넌 여자라고 말할 수 없어 너를 여자라고 말하는게 창피하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했다. 피해자는 이에 총여학생회에 신고하였고, 총여회는 최교수를 만났으나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며, 학내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에 정식 회부해라(최교수는 예대위 교수 위원임,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니 자신은 빠지겠다는 말을 당당히 함)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 방향으로 사건 처리를 고민했지만,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여서 사건 해결은 지지부진하게 끝내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정상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자보를 통해 문제제기로 끝날 예정(01년 3월)이다.

시대 교수, 교직원 성폭력 사건 4월 11일 등록금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을 진행하던 중, 한 여학생을 교수들과 교직원이 둘러싸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일이 생겼다. 이에 그 피해자는 "만지지 마십시오

오, 이것은 성추행이 아닙니까?"고 말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 한다고 몰아 부쳤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접촉도 불쾌하였지만 이후 나온 가해자들의 언행에 수치심을 느끼고 총여학생회에 신고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건을 직접 신고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여학생회는 중인과 가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사건에 대한 공론화하고 마무리 지었다.

시대 음악학과 윤** 교수 사건 6월 15일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성희롱교수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음대학생들>이라는 명의로 게시되었다. 6월 22일 음악학과 '임시비상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피해사실을 확인되었다. 6월 28일 사실확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총학생회·총여학생회·예술대학생회로 구성되었다. 이후 공대위는 해당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의 개인면담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이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고, 결국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수업 시간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농담은 불쾌하거나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교수님도 답변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성폭력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음, 수업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정도로-하고, 공론화 하였다.

시대 윤** 교수 언어적 성폭력 사건 공대위는 6월 윤교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윤교수가 '99년도 있었던 사건(종강파티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마무리 지음)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대위는 이 사실을 '99년 사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2차 성폭력으로 보고, 공대위에서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였다. 현재, 교수는 해명서를 보내왔는데, '99년 사건과 이번 일을 구별하지 않고 작성한데다가, 피해자가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 '99년 당시 종강파티에 함께 있었던 학생들을 만나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해명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 답변이 계속 없을 경우, 해명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첨가해서 공론화할 예정이다.



보/론/-2000년/성/폭/력/사/례/및/예/결/과/정

유형별 성폭력

1 사이버(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공간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이버(온라인) 성폭력이 생겨나게 되었다. 최근에는 동영상, 화상채팅에 의한 성폭력 등이 일어남으로써 언어적인 성폭력이나 위협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점차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기도 하다. 공간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특정 공간에서 마음놓고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권 침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 상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 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은 단지 정신적 피해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통신 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자연스럽게' 현실 공간의 성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이를테면 '번개'를 통해 만난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고 대화요청을 하던 자가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은 기존 사회환경에서의 불평등이 통신환경에서 드러난 것이며 사이버 공간 자체가 이미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우선 거부의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거부의를 표현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한다면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좋다.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둔다든지 화면을 갈무리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를 확보해두면 각 통신사나 사이버성폭력신고센터(www.gender.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사례: 김현일 사이버 성폭력 사건

나우누리 동호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등의 피해를 가하였다. 이에 여러 단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고소하였으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 사이트 www.stopper.or.kr

2 스토킹

몇 년전부터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스토킹은 아직 개념규정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스토킹을 하나의 피해로 인식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들이나 스토킹 피해와 심각성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적, 반복적, 일방적으로 편지, 선물을 전달하거나 전화, 따라다니기, 집앞에서 기다리기, 찾아가기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스토킹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이다. 스토킹을 바라보는 사회의 통념은 스토킹을 정신병적 행위나 구애의 한 방식쯤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특정 연예인들에게만 일어나는 해프닝이나 정신병자의 일탈행동이 아니라 현 사회의 성적 권력관계와 동떨어지지 않은 문제이다. 스토킹은 현 사회의 권력적/위계적 남녀간의 성적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과도 연관될 수 있다.



보/론/-2000년/성/폭/력/사/례/및/예/결/과/정

스토킹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는 방식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과 연결된다. 스토킹이 많은 경우 연애편제와 연관되는 문제라고 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행위는 낭만적인 사랑의 한 형태로 여겨지게 된다. 이렇게 여성의 no가 no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매우 유사하다. 스토킹의 가해자들이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보장받지 못한 권력을 사회적인 위계속에서 하위에 있는 여성에게 투영시키고 싶어한다는 것 역시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스토킹은 아는 사람에게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은 하나의 단절된 행위가 아니며 성폭력과 연결되는 일련의 흐름을 가지는 행위이므로 개별행위를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스토킹은 '여성경험의 연속성'과 연관된다. 물리적인 가해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수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것이 또다른 형태의 성폭력 등 가해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스토킹 및 환경침해 유형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생활을 불편하게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메일을 보내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후 접근을 삼가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정식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기준을 둘러싼 공방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사건이 공개된 후에는 그에 대한 반박 자료가 불기도 하였다. 한달 정도 비대위 활동을 한 후 사건은 공개되었고 가해자는 학내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2001년 1월 현재 피해자 역시 외부에서 치유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서울대 스토킹 및 환경침해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1년 간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였고, 이를 목격한 주변인이 사건을 신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학내에서의 활동금지 그리고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 학기를 휴학하고 모니터링 기간 이외에는 학내 출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고대 가해자는 연애 관계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의 개인적 사과문 제출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3 화장실 성폭력

화장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가 도주할 시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잡기는 하였으나 가해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피해는 분명하지만 사건 해결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가 지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화장실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다. 또한 화장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가해자가 지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주위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장실 성



보/론/-2000년/성/폭/력/사/례/및/예/결/과/정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학교측에 화장실 설비 보수나 외진 곳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대책마련, 비상벨 설치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화장실 칸막이나 문의 빈틈을 없게 만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등을 설치함으로써 화장실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균관대, 고려대 등에는 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2000년에 일어났던 화장실 성폭력 사례

시대 도서관 화장실 성폭력 사건 5월 23일 도서관 신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학생이 들어와서 화장실 문 차례 틈으로 본 것을 피해자가 알고 뒤쫓아갔으나 가해자를 놓치고 말았다. 피해자는 작년 사건에 이은 도서관 화장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총여학생회에 신고하였고, 사건을 공론화하고 마무리 지었다.

시대 학생회관 화장실 성폭력 사건 11월 여학생이 화장실에 갔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열칸을 확인하였다. 열칸에는 남학생이 있었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자위를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자필실명사과문을 쓸 것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 결국 학내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에 신고했고, 예대위에서는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 합의하도록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자고 결정했다. 이후 가해자가 자필실명사과문에 대해 합의를 해서 작성했다. 하지만 군입대로 진행중인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은 휴가때 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학생회관을 비롯한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건물 출입을 금하기로 했다. 가해자의 사과문은 가해자의 대리인이 부착했고, 자보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 되었다.

고대 정경대 화장실 성폭력 사건 정경대 2층 여자화장실에 남학우가 들어간 사건으로 정경대 내에서 자보화되었다. 사건 후 여위에서는 중운위와 공동 명의로 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요구하였고 이후 10월에 비상벨이 설치되었다.

고대 교수에 의한 화장실 성폭력 가해자는 서창캠퍼스 경상대 교수였다. 가해자가 특수연구동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가해자는 고의성을 부인하다 결국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였고 실명공개사과로 자보화되었다. 이 사건으로 화장실 비상벨 2차 요구에 들어가 10월에 비상벨이 설치되었다.

고대 화장실 성폭력 사건 교양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화장실 안에 있던 남학우가 거울을 보고있던 여학우에게 실수로 들어온 것처럼 말한 뒤 썩 웃고 나간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양관에 경고문을 부착하였다. 이후 학생회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남자가 발견됐던 사건을 신고 받고 학생회관에도 역시 경고문을 부착하였다.

성대 술집화장실 사건 술집의 화장실에서 훔쳐보던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고자 근처 일대를 샅췌으나 가해자가 도주하여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여론화도 해내지 못했다.